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09호 2021. 6. 25.(금)

**조 려**

제2764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2  
 제2765호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4  
 제2766호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6

**공 고**

제2021-1290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..... 14  
 제2021-1299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·공고 ..... 16  
 제2021-1301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·공고 ..... 18  
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제2021-9호 팔봉산 등산로 입장마감시간 연장 알림 ..... 20

회람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

(전화 : 033-432-7801, FAX:033-430-2019)

**조례**

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홍 천 군 수 허 필 홍

2021년 6월 25일

홍천군 조례 제2764호

**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항제7호 중 "이장협의회"를 "이장연합회 및 이장협의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<u>이장협의회</u> 등 각종 회의</p> <p>8.·9. (생 략)</p>	<p>제5조(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② ----- ----- 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이장연합회</u> 및 <u>이장협의회</u> ----- -----</p> <p>8.·9. (현행과 같음)</p>

**조례**

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홍 천 군 수 허 필 홍

2021년 6월 25일

홍천군 조례 제2765호

**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 제6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원활한 말단 침투와”를 “원활한 추진과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조장할”을 “조정할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, 이장의 추천으로 읍·면장이 위촉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추천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
2.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자

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6항----- -----.</p>
<p>제2조(하부조직)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.</p>	<p>제2조(하부조직) ----- 원활한추진과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구획기준)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,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. 다만,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여 현실정에 맞도록 <u>조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구획기준)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정할</u> -----.</p>
<p>2. (생 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반장) ① (생 략)</p> <p>②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된다.</p> <p>1. 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6월 이상거주한자로써 20세이상의 자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·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,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.</p>	<p>제5조(반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, 이장의 추천으로 읍·면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추천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</p>
<p>&lt;신 설&gt;</p> <p>③ (생 략)</p>	<p>2.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자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실비 변상액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3조(실비 변상액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**조례**

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홍 천 군 수 허 필 흥

2021년 6월 25일

홍천군 규칙 제2766호

**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"를 "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"도시림"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"도시숲"이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, "제2조제4호"를 "제2조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"생활림"이란 법 제2조제5호"를 ""생활숲"이란 법 제2조제2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법 제2조제6호"를 "법 제2조제3호"로 한다.

제3조 중 "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"도시림등""을 "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"도시숲등""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"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"를 "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"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"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계획)"을 "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계획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법 제20조"를 "법 제6조"로, "도시림등의"를 "도시숲등의"로, "도시림등"을 "도시숲등"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"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지역)"을 "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지역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시림"을 "도시숲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도시림등"을 "도시숲등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도시림등"을 "도시숲등"으로 한다.

제8조 중 "도시림등"을 "도시숲등"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"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"를 "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"를 "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20조의2"를 "법 제13조"로, "도시림등의"를 "도시숲등의"로, "도시림등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"를 "도시숲등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법 제20조"를 "법 제6조"로, 같은 호 부터 제4호까지 중 "도시림 등"을 각각 "도시숲등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"도시림등"을 "도시숲등"으로 한다.

제14조 중 "도시림등"을 "도시숲등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법 제21조제1항"을 "법 제12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도시림 등"을 "도시숲등"으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홍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도시림"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.</li> <li>2. "생활림"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.</li> <li>3. "가로수"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홍천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관할 구역의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"도시림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조성·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</u></p> <p>제4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계획)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"도시림등 조성·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지역) 군수가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2. (생 략)</li> <li>3.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 및 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</li> </ol>	<p><u>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도시숲"이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 제2조제1호-----.</li> <li>2. "생활숲"이란 법 제2조제2호----- -----.</li> <li>3. ----- 법 제2조제3호-----.</li> </ol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"도시숲등"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</u></p> <p>제4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계획) ----- 법 제20조----- 도시숲등의 ----- -----도시숲등 ----- -----.</p> <p>제5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지역) ----- 도시숲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----- 도시숲등 ----- -----</li> </ol>

제7조(주민 참여 및 지원) ①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유지·관리, 녹지경관조성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, 장비,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평가 및 시상) 군수는 도시림등 및 녹지경관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다.

제3장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

제9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도시림등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 등 조성·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
3. 도시림 등 관련사업의 계획 및 설계
4.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관련 전문가
2. 3. (생략)

제1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·

제7조(주민 참여 및 지원) ① -----  
도시숲등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평가 및 시상) ---- 도시숲등 -----  
-----.

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

제9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----  
법 제13조----- 도시숲등의 -----  
----- 도시숲등  
조성·관리심의위원회-----.

1. 법 제6조----- 도시숲등 -----
2. ----- 도시숲등 -----
3. 도시숲등 -----
4. ----- 도시숲등-----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도시숲등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간사) -----  
----- 도시숲등-----

<p>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.</p> <p>제17조(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) ① <u>법 제21조제1항</u>에 따라 군수 외의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가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관련 법령, 조례 및 <u>도시림 등 기본계획</u>, 가로수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,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제17조(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) ① <u>법 제12조제2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도시숲 등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[별표 1]

부담금의 산정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^ 피해 발생의 경우 v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벌목,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</b> ⇒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</li> <li>○ <b>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</b> ⇒ 수목비의 20% + 실작업비 + 보호시설 재료비 ※ 과도한 가지훼손 : 수관의 1/3이상 훼손</li> <li>○ <b>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</b> ⇒ 실작업비</li> </ul>
^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이유 v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이식하는 경우</b> 가.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: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    ※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 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    ⇒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</li> <li>○ <b>제거하는 경우</b> 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: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    ⇒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.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    ⇒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+제거비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급공사 설계비 :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에 의한 원가     계산 적용(재료비 + 노무비 + 제경비)하여 산정</li> <li>○ 수목비 : 가격정보(조달청)지 가격,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</li> <li>○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: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    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</li> <li>○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: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가로수에 대한 가치     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</li> </ul>	

[별지 제1호서식]

가로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심고 가꾸기 <input type="checkbox"/> 옮겨심기 <input type="checkbox"/> 제 거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지치기	승인 신청서
신청인	성 명(상호명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주 소(소재지)	연락처
사업대상	가로수 위치	
	수 종 명	규 격
	수 량	수 고 : 가슴높이 지름 : 근원지름 :
사 유		
작 업 방 법		
사 업 기 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 일간)	
<p>「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자 (서명 또는 인)</p>		
<p><b>홍 천 군 수 귀 하</b></p>		
<p><b>붙임 서류</b></p> <p>1. 사업계획서 1부.                  2. 위 치 도 1부.                  3. 현황도면 1부.                  4. 관련 인·허가 서류 사본 1부.</p>		
<p>※ 홍천군에서는 가로수 조성등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)를 수집하고자 하며,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, 개인 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,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?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</p>		





**공고**

홍천군 공고 제2021-1290호

**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**

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.공고 합니다.

2021년 6월 23일

홍 천 군 수

1. 공 고 명 :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(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83 외1필지, 이\*호)
2. 건축위치 :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83번지
3. 도로위치 :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83번지 외1필지(82-4)
4. 도로길이 : 93m
5. 도로너비 : 6m
6. 도로면적 : 558㎡
7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비고
			공부면적	지정면적		
홍천군 홍천읍 태학리	83	전	1,388	314	이*호	
홍천군 홍천읍 태학리	82-4	전	1,576	244	엄*순, 변*수, 변*수, 변*홍	

위치도 및 현황도



현황도



위치도

축척 [N] 1/1200, [ ] 1/2,000

**공고**

홍천군 공고 제2021-1299호

**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-공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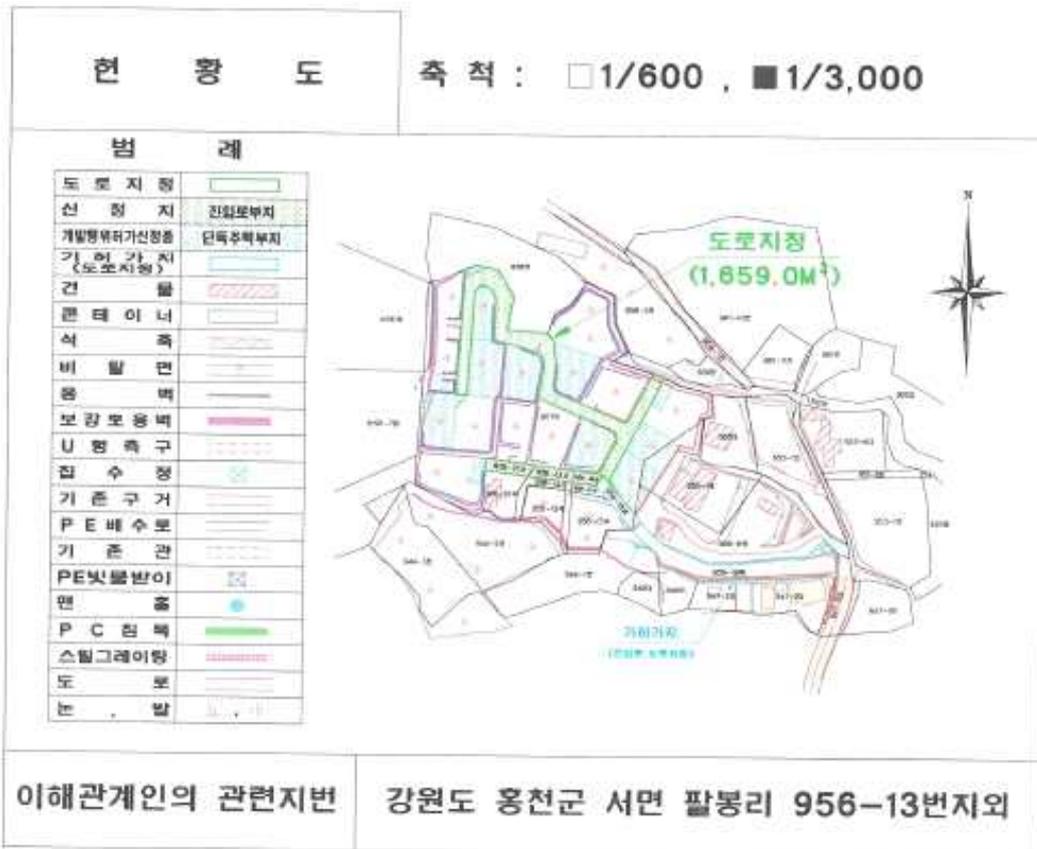
‘홍천군 도시계획조례’ 제22조 및 ‘건축법’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(변경)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-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25일

홍 천 군 수

1. 사업명 :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
2. 도로위치 :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956-13 외 3
3. 도로길이 : 290.17m
4. 도로너비 : 5.0 ~ 10.1m
5. 도로면적 : 1,659m<sup>2</sup>
6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	소유자	비고
			공부면적	지정면적		
서면 팔봉리	956-13	과	104	104	한*수	
	956-16		67	67		
	956-21		116	116		
	957	전	9,099	1,415		



**공고**

홍천군 공고 제2021-1301호

**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-공고**

‘홍천군 도시계획조례’ 제22조 및 ‘건축법’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(변경)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-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28일

홍 천 군 수

1. 사업명 :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
2. 도로위치 :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산27
3. 도로길이 : 71.2m
4. 도로너비 : 6.0m
5. 도로면적 : 437㎡
6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비고
			공부면적	지정면적		
남면 유목정리	산27	임	8,758	437	채*묵	

(2면중 제2면)



**공고**

홍천군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-9호

**팔봉산 등산로 입장마감시간 연장 알림**

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팔봉산 등산로 이용 수요 증대로, 한시적으로 팔봉산 등산로 입장 마감시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.

기간은 2021. 6. 21.(월)부터 2021. 8. 15.(일)까지이며, 입장마감시간은 15:30입니다.

단, 퇴장시간은 여전히 18:00입니다.

우리 팔봉산은 하산로가 응달(음지,陰地)입니다. 방문객 여러분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하산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간 이후에는 입장마감시간이 15:00로 변경됩니다.

팔봉산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방문객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